##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40 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김도읍・인요한・조배숙

장동혁 • 박성훈 • 김정재

구자근 • 정점식 • 서지영

권영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기관·의료기관·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, 보수교육의 시기·대상·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, 직역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하나,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타 보건의료직종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조산사, 간호조무사, 응급구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기관·의료기관·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

는 영양사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국 민의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0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보수교육을"을 "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보수교육) ① 보건기관・	제20조(보수교육) ①
의료기관 · 집단급식소 등에서	
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	
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	
상을 위하여 <u>보수교육을</u> 받아	<u>매년 8시간 이상의</u>
야 한다.	<u>보수교육을</u> 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